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68호 2020. 6. 4.(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54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취소사항 고시 ----- 3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733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4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668호

사천시 고시 제2020-154호

##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고시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대흥그랜저맨션 일원의 『고읍 대흥그랜저맨션 일원 합류식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사 천 시 장

### 1. 인가내용

시 설 의 명 칭	고읍 대흥그랜저맨션일원 합류식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시행자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성 명	사천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사 업 목 적	주거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일원 ○ 면적 : 0.06 ha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종류 : 「하수도법」 제2조8호의 분류식하수관거 ○ 명칭 : 고읍대흥그랜저맨션일원합류식하수관로개선사업 ○ 용량 : 오수관 (D200~300mm) L=621m, 배수설비 26개소	
예정 하수처리구역	사천처리구역(연계처리)	
사 업 시 행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사 천 시 공 보

제 668 호

## 2.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소재지	부동산의 표시			시설면적 (㎡)	실제 이용현황	소유자	용도	비고
	지 번	지 목	지 적 (㎡)					
합 계				521				
정동읍면 고읍리	433-1	답	2,740	179	도로	국(농림수산부)	하수관매설	
	464-6	임	653	25		한국농어촌공사		
	464-5	답	692	45		김*의		
	439-3	답	793	18		국(농림축산식품부)		
	464-4	답	20	1		이*조외4인		
	469-10	묘	1,306	104		한국농어촌공사		
	469-13	대	9	1		한*엽		
	613	도	543	4		국(국토교통부)		
	447-13	도	278	77		삼전건설주식회사		
	439-4	전	70	1		국(사천시)		
	438-84	대	109	26		국(사천시)		
	438-85	임	399	13		국(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766-1	전	3,599	6	도로	국(건설부)	하수관매설	
	302-1	답	112	1		국(국토교통부)		
	302-2	구	122	5		한국농어촌공사		
	764-14	구	971	14		국(농림축산식품부)		
	296-1	답	153	1		국(국토교통부)		

3.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055-831-55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668호

사천시 고시 제2020-16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취소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취소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6. 4.

## 사 천 시 장

1. 승인취소 연월일 : 2020.06.01.
2. 취소사유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취소
3.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제2019-9호(2019. 04. 30.)
2. 점용·사용의 목적 : PE 부잔교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227-2번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의 면적 : 430㎡ (직접 149, 간접 281)
5. 승인취소 대상자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 천 시 공 보

제668호

사천시 공고 제2020-733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 6. 4.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 6. 4. ~ 2020. 6. 18.(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08무2991	스타렉스인터클러단축9인오토	김*정	2020. 05. 27.	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한 후, 폐차가 된 차량인 줄 알았으나 폐차가 되지 않고 압류가 발생하여 운행정지 요청함.

####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668 호

-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